

##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2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6. 29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개정이유

○ 승강기산업체를 조례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신·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로써 지원하는 “기업”의 범위(정의)에 승강기산업체[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(공장, 본사, 연구소 포함)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·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·법인·단체]를 포함하여 규정함(안 제2조제1호).

나.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 지원기준을 마련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 신설).

○ 「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8조,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9. 3. 17. ~ 2009. 4. 6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사업체”를 “사업체 및 승강기산업체[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(공장, 본사, 연구소 포함)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·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·법인·단체]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대부료 이자지원”을 “이자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부계약”을 “계약”으로, “대부료를”을 “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”로, “대부료”를 “대부료 또는 매각대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부료이자”를 “이자”로 한다.

2. 「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

제15조, 제16조제2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각각 “기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 (본문 생략)</b></p> <p>1. "기업"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·레저 산업을 하는 <u>사업체</u>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<u>기업</u>을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 (본문 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체 및 승강기산업체</u> [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(공장, 본사, 연구소 포함)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·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·법인·단체]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대부료 이자지원) ①</b>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대부계약</u>을 체결하고, 대부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5년간 <u>대부료</u>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(생략)</p>	<p><b>제14조(이자 지원) ①</b> ----- ----- ----- <u>계약</u>----- <u>대부료 또는 매입대금</u>을 ----- ----- ----- <u>대부료 또는 매각대금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8조 제3항제4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<u>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<u>대부료이자</u>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이자</u>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지원기준) 제12조제1항 및 제13조,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<u>중소기업</u>이어야 한다.</p>	<p>제15조(지원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업</u>----- --.</p>
<p>제16조(우선구매 및 판로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<u>중소기업</u>의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 국내·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6조(우선구매 및 판로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해외품질규정인정 지원) ① 군수는 <u>중소기업</u>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<u>중소기업</u>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해외품질규정인정 지원) ① --- <u>기업</u>----- ----- --- <u>기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 ① 군수는 <u>중소기업</u>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 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를 포함한다)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 ① --- 기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<u>중소기업</u>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 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으로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 --- ----- ----- ----- 기업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이자 보조금신청서

신청인	상호·명칭		사업자 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대표자 주소 (법인소재지)		전화	
F A X				
입주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증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에(            )			
공장설립일 (공장설립 예정일)		업종 (분류번호)	(            )	
공장시설 투자금액	백만원	신규채용 상시근로자	명	
공장소재지	경남 거창군 (산업단지명칭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
<u>대부 또는 매입 내용</u>	면적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m <sup>2</sup>	<u>대부료 또는 매입대금</u>	금	원
신청금액	금	원(대부료 또는 매입대금 × 0.06)		
<p>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<u>이자</u>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>거창군 수귀하</p>				
※ 구비서류 1. 거창군과 대부(매매)계약서 또는 산업단지분양 계약서 사본 1부 2.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1부 3. 공장시설투자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				수수료
				없음

[별지 제2호서식]

## 전시(박람회)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

※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,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.

기업체 현황	업 체 명					대표자				
	소 재 지	거창군								
	종업원수	명			주 생산품					
	연 락 처	부 서				담 당 자	직 위			
		전 화					성 명			
		팩 스					휴대폰			
	홈페이지					이메일				
참가실적	최초신청( ), 참가(CECO 회, 국내전시 회, 국외전시 회)									
전시회 (박람회) 참가사업 계획서	전시회명									
	개최기간	년 월 일 ~			년 월 일(일간)					
	개최장소									
	참가품목									
	참가부스	부스		총 면 적		제곱미터				
	참가목적									
사업비 집행계획	신청금액	금		(₩ )						
	항목	내역	재원내역(단위/원)							
			계	군보조	자부담	그밖에				
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(박람회)에 참가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							
신청인 업체명 :				대 표 :				(인)		
거    창    군    수    귀    하										
※ 구비서류 : 1.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.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										

[별지 제5호서식]

## 장학생추천서

□ 학생기본 사항

성 명	학 교	학 과(부)	학 년

□ 회사 및 근로자 기본사항

회 사		근 로 자	
회 사 명		소속부서	
주 소		성 명	
업 종 명		주 소	
근로자수		연 락 처	자 택 : 휴대폰 :

□ 확 인 내 용

근로자 근무기간	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	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거창군수 이상의 표창여부	비 고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확인자 직위 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성명</span> (인)			

위 학생을 200 년도 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추천자 :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 (인)

붙임 :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1부

거창군수 귀하